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
- 회부일자 : 2019년 8월 22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8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여비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업무의 특성, 출장 중 여비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을 자율 결정하도록 기준 설정(안 제2조)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 시 여비(운임)지급 기준 확정(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공무원 출장여비로 인한 문제점이 전국 지자체에 드러남에 따라, 상시출장대상 공무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별표1에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
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생 략)</p> <p>② <u>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분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u>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